

부산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51187(본소), 2016나51194(반소) 판결 [구상금 · 사업비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변 론 종결 2016. 6. 9.

판결 선고 2016. 7. 21.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102308(본소), 10231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60,15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15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11행의 "2011.3. 5."을 "2011. 3. 15."로 고치고, 제11면 제14행에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으로 "3 피고는 공사비 총당을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분양수입금을 수령할 수있을 뿐이고 이때에는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나 이와 달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과하여 졌는바 이는 피고의 채권보전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아래 각 부분을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철회에 따라 제15면 (2)1항 및 제16면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항 "이에 원고,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 진행 중이다." : "이에 원고,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5나56680),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 중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된 부분은 압류명령 신청시 명시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459,709,1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2016다222132) 진행 중이다."

나. 제13면 마지막행 4항 :

"이 사건 공사계약 제35조에 의하면 조합원 분담 및 일반분양수입금으로 금융비용, 대여금(사업경비 등),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정산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분양수입금을 대신하는 이 사건 상가 평가액 14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당연히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채권보전비용 명목으로 별도로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 점"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무상지분율 등의 조정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원고조합의 해산결의 후 청산단계인 현재 상태에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금전 청산의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이자 대여금

및 민원처리비를 변제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민원처리비는 사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수입금으로 변제충당할 수 없고, 원고가 별도로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이자 대여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 제29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통지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무상지분율 및 무상지분면적과 분담금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조 제5항에서는 '제13조 제1항의 사업경비는 제35조에 의한 방법(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별도로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에 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유이자 대여금 발생 사실을 원고 조합의 해산결의 이전에 서면통지 하는 등 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령 피고 주장과 같이 상호 합의 하에 무상지분율 및 무상지분면적과 분담금 등을 조정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으로 청산할 의무를 곧바로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제13조 제1항 제18호에는 사업경비 항목 중 "기타 사업추진 필수경비" 항목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민원처리비는 위 항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비용은 위 공사계약 제35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관점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 박찬호, 판사 주성화